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15303
-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6.

발의자 : 한창민 · 신장식 · 최혁진

용혜인 · 정혜경 · 김종민

윤종오 · 박정현 · 김재원

### 손 솔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협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18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